

의 안 포 함	제2590호~2597호
------------------	--------------

2025. 3. 11.(화) 11:00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7건: : 붙임 참조 (제정조례안4, 개정조례안1, 동의안1, 변경안1)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보 고 총 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590호 :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제2592호 : 2025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의안번호 제2593호 :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사전동의안
- 의안번호 제2594호 : 장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595호 :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안번호 제2596호 :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안번호 제2597호 : 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II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1차 행자위)
제2590호	2025. 2. 20.	장성군의회위원장 (최미화 의원)	2025. 2. 28.	2025. 3. 10.
제2592호	2025. 2. 27.	장성군수	2025. 2. 28.	2025. 3. 10.
제2593호	2025. 2. 27.	장성군수	2025. 2. 28.	2025. 3. 10.
제2594호	2025. 2. 27.	장성군수	2025. 2. 28.	2025. 3. 10.
제2595호	2025. 2. 27.	장성군수	2025. 2. 28.	2025. 3. 10.
제2596호	2025. 2. 27.	장성군수	2025. 2. 28.	2025. 3. 10.
제2597호	2025. 2. 27.	장성군수	2025. 2. 28.	2025. 3. 10.

Ⅲ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025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사전동의안	원안가결
장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2. 20.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김연수 의원)
- 회부일자 : 2025. 2. 28.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0.(제36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탁계약의 해지 및 감독·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안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5. 토론요지 : 없음****6. 심사결과 : 원안가결****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2. 27.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5. 2. 28.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0.(제36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2025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변경사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일반회계로 상환하여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
- 재 원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탁금, 이자수입, 수익금 등

구 분	항 목	수입 및 지출액		증감
		기정	경정	
수 입	계	1,198,469	17,696,731	증16,498,262
	예치금회수(a)	1,166,394	1,166,837	증443
	예수금수입(b)	-	16,298,167	증16,298,167
	이자수입(c)	32,075	231,727	증199,652
지 출	계	1,198,469	17,696,731	증16,498,262
	예수금원리금상환(d)	-	16,497,819	증16,497,819
	예치금(e)	1,198,469	1,198,912	증44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일반회계로 상환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안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2. 27.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5. 2. 28.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0.(제36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2년 연속 교부세 감액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외부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방채 차입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사전에 장성군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발행현황) 해당없음
- (발행계획) 112억 ※ 발행한도액 : 385억원
- (대상사업) 1개 사업

사업명	지방채 차입선	발행 (예정)액	용자조건	이자율	발생이자 총액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지역상생 발전기금	112억	2년거치 8년균등분할상환	3.25%	20억

※ 변동금리 : 기준금리+0.25% (지방채 인수 시점 및 이율 조정 등으로 이자 총액 변동될 수 있음)

- (상환계획)

발행액	상환기간	상환내역			
		이자(2년 거치)		원금+이자(8년 상환)	
		기간	금액	기간	금액
112억원	2년 거치 8년 상환	2025~2026	총 7.2억원 (연 3.6억원)	2027~2034	총 124.7억원 (연평균 15.6억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사전동의안은 2년 연속 교부세 감액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외부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방채 차입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사전에 장성군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 발행계획은 지역상생발전기금 112억원이며 2년거치 8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율은 3.25%, 발생이자 총액은 약 20억원으로 이자 부담은 있으나, 앞으로 장성군에서는 지방채 관리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조기상환 등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 수립·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 조례안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2. 27.
- 제출자 : 장성군수(관광과장)
- 회부일자 : 2025. 2. 28.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0.(제36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2025 장성방문의 해」를 성공적 운영과 더불어 관광진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 정의 확대 (안 제2조 제1항 제7호)
 - “지속가능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환원되며, 관광지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 관광객 유치 지원 등 확대 (안 제4조 제1항 제4호)
 -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활동과 관광여건 조성 및 지원하는 경우
- 관광객 유치 지원 등 확대 (안 제4조 제1항 제5호)
 - 관광택시 등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지원사업 확대 (안 제6조 제1항 제3호)
 -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관광여건을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
- 지원사업 확대 (안 제6조 제1항 제4호)
 - 관광택시 등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위탁 대상 업무 등 확대 (안 제9조 제1항 제3호)
 - 관광택시 등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상품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2025 장성방문의 해」를 성공적 운영과 더불어 관광진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 조례안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2. 27.
- 제출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회부일자 : 2025. 2. 28.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0.(제36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 제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시설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주간보호시설 입·퇴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 제공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안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2. 27.
- 제출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회부일자 : 2025. 2. 28.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0.(제36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과 시설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안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2. 27.
- 제출자 : 장성군수(건강증진과장)
- 회부일자 : 2025. 2. 28.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0.(제36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하고, 출산 장려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급 대상·지급액 및 지급방법(안 제5조 ~ 제6조)
- 지급신청 및 결정, 지급 중단 등(안 제7조 ~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하고, 출산 장려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안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